

##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0. 6. 19 규칙 제123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행계획 수립) 「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방향
2.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
3. 관련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,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)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,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(제3조제3항 관련)

항목별 기준

항 목	심 의 기 준	배점	
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.</li> <li>- 30개소 이상 : 6점</li> <li>- 40개소 이상 : 8점</li> <li>- 50개소 이상 : 10점</li> </ul>	10	
자치기구 구성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변영회,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.</li> <li>- 운영기간 1년 미만 : 6점</li> <li>- 운영기간 1년 이상 : 8점</li> <li>- 운영기간 2년 이상 : 10점</li> </ul>	10	
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.</li> <li>- 30개소 이상 : 6점</li> <li>- 40개소 이상 : 8점</li> <li>- 50개소 이상 : 10점</li> </ul>	10	
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.</li> <li>- 상인의 70% 이상 동의 : 6점</li> <li>- 상인의 80% 이상 동의 : 8점</li> <li>- 상인의 90% 이상 동의 : 10점</li> </ul>	10	
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</li> <li>- 상인의 70% 이상 동의 : 6점</li> <li>- 상인의 80% 이상 동의 : 8점</li> <li>- 상인의 90% 이상 동의 : 10점</li> </ul>	10	
거리의 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.</li> </ul>	10	
거리의 역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.</li> </ul>	10	
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,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</li> </ul>	30	
	가.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		10
	나.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		10
	다.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	10	

비고. “음식점”이란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“일반음식점”, “휴게음식점”, “제과점”을 말한다.

심의 기준

- 항목별 득점비율은 60% 이상 이어야 한다.
-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

신청인 (상인조직 대표자)	성 명		생년월일	(남, 여)
	주 소		전화번호	
	단체명			

신청사항	음식문화거리명	
	위 치(소재지)	
	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	
	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	
	신청 동의한 상인 수	

「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(상인조직 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**광 명 시 장**    귀하

### 제출서류

1. 고유번호증(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)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2. 상인회 동의서(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)
3.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(업종, 업소명 포함)
4.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(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, 음식점 위치 표시)
5.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(신청 배경 및 목적, 활성화 계획 등 서술)

[별지 제2호서식]

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			
거 리 명		신청당시 업소수	
위 치 (소재지)			
지정일자		지정번호	
상인조직 대표자명		전화번호	
기 타 (변동·참고 사항)			
음식문화거리 사진			